**부동의 사유**

1. 협의 이혼 시 자녀의 분리양육으로 인해 아이들에게 갈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서로 간에 협의 한 내용(각서)이 있습니다. – 후면 서류 첨부1-
2. 분리양육 상황이며, 상대방 측 재혼 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둘째 아들의 입양 판단은 성급하며 이성을 잃은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3. 둘째 아들의 돌잔치가 끝난 직 후 진행된 이혼이라 아들의 의지대상이 엄마뿐이고 이 상황을 억지로 떼어내는 움직임은 둘째 아들에게 정서적인 상처를 남길까 봐 데려오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양육 능력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4. 자녀를 위해 합의한 최소한의 약속도 이행 못하는 자가 자신의 편리를 위해 섣부르게 분리양육 중인 형제 간의 마지막 연결 고리를 해(害)할 권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신청자가 계부로 되어있는데 이는 본인의 재혼과 관련한 사회적 문제를 아이를 희생시켜 해결하려 한다는 부분에서 납득 할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5. 이혼 상대방 측은 어머니라는 사람이 이혼 후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첫째아이 면접교섭 진행은 단 1건으로 그 마저도 아이에게는 낯선 재혼자와 여행가는 길에 잠깐 들려서 억지로 장난감과 과자를 미끼로 낯선 차에 태우려 하였습니다. 1년만에 찾아온 엄마도 낯선 상황에 앞서 언급한 상황까지 겹쳐져 첫째 아이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현재 첫째 아이는 엄마를 보고 싶지 않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시각 둘째 아이는 남한테 맡겨놓고 놀러 가는 길에 첫째 아이 면접교섭을 하러 왔다는 점에서 과연 아이들에게 애착이 있긴 한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6. 가장 최근에는 면접교섭지로 협상 되어 있던 각자 아이의 ‘집 앞’이라는 협의사항에 따라 갑자기 바뀌게 된 면접교섭 장소에 대해 증명을 요청했으나, 재혼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고소하라는 태도로 일관하여 면접교섭을 방해한 사례도 있습니다.-문자 메시지 자료 첨부-
7. 이혼 상대방의 요청으로 분리 양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본인이 두 명을 키울 능력은 안 되지만 정성을 다해 혈육을 키우고 싶다며 요청한 것이고, 반대로 저는 향후 재혼 계획이 없으며 두 명을 모두 키울 수 있으니 재혼 가능성 또는 생각이 있다면 형제들끼리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자고 했습니다. 과정에서 상대방은 부모님께 재롱부릴 손주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분리양육을 주장했습니다. 때문에 자녀들의 복리에 관한 안전장치로 1번에서 언급한 협의 각서를 작성하였으며, 협의 과정 중에 성과 본 이런 부분을 바꾸지 않기로 협의하여 훗날 재혼하게 되면 양육권과 친권을 모두 비 재혼자 에게 돌려주어서 형제끼리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자 서로 확인 후 같은 내용의 각서 1부씩 나눠가지며, 이혼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들은 그런 사실을 인정하려 들지 않고 그저 어른들의 이기심으로 자신의 환경 조성에만 – 카톡 메시지 자료 첨부1-
8. 멀쩡히 피를 나눈 형제가 있음에도 판단할 수 없는 어린 나이에 피한방울 섞이지 않은 계부와 형제를 억지로 받아들이게 하는 부모가 과연 정상인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 본이 달라 아이에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어른으로써 아이들을 위해 최소한의 약속으로 작성되었던 내용을 이행하여 책임을 지는 방법이 있음에도, 자신의 이기심을 자식에게 강요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저는 입양에 부(不)동의하며, 둘째 아이가 성인이 되어 성과 본을 꼭 바꾸고 싶다고 한다면 그때 가서 바꾸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9. 마지막으로 아이는 부모에게 이혼은 요청한 적도 엄마 또는 아빠랑 살고 싶다는 요청 또는 계부랑 살고 싶다는 요청을 한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어른들의 이기심에 아이는 상처만 받고 있는 상황이고, 성과 본을 바꾸겠다고 소송 걸고, 입양을 하겠다고 성급하게 진행하는 상황 또한 “아이가 원하는 상황일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생의 존재를 알고 있는 첫째 아이에 대한 염려와 걱정은 완전히 무시한 체, 재혼가정으로써 본인들이 선택한 만큼 어른으로써 스스로 감내해야 될 문제를 아이를 통해 해소 하고자 하는 모습 또한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하여 원래는 차근 차근 아이가 성장하고 면접교섭을 진행하여 본인의 상황을 인지 할 수 있을 때 선택권을 아이에게 주어 어떻게든 덜 상처받는 상황을 만들어 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으나, 둘째 아이가 전입 신고가 된지 몇 개월 되지도 않은 상황에 급하게 성 본 변경 신청을 하고, 부모 자식 관계를 해하려는 수작을 동시에 진행하는 모습을 보고 더 이상 간과 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곧 양육권 및 친권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며, 둘째 아이에게 피를 나눈 형제끼리 오손도손 살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을 해주고자 합니다.

-이혼 직전 성씨 관련 협의-

